

## 건설기술진흥법 최근 동향과 전망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1.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의 배경

다가오는 2014년 5월 23일은 지금까지 26년간 국내 건설 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어 운영되던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그렇다면 “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화하려 했는가?” 이는 지금까지 건설 기술용역시장의 지속적인 축소로 인하여 국내 건설기술용역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칸막이식 업역체계의 구분으로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기술력 확보

보에 어려움이 있고, 해외시장에서 국내 기술력과 경쟁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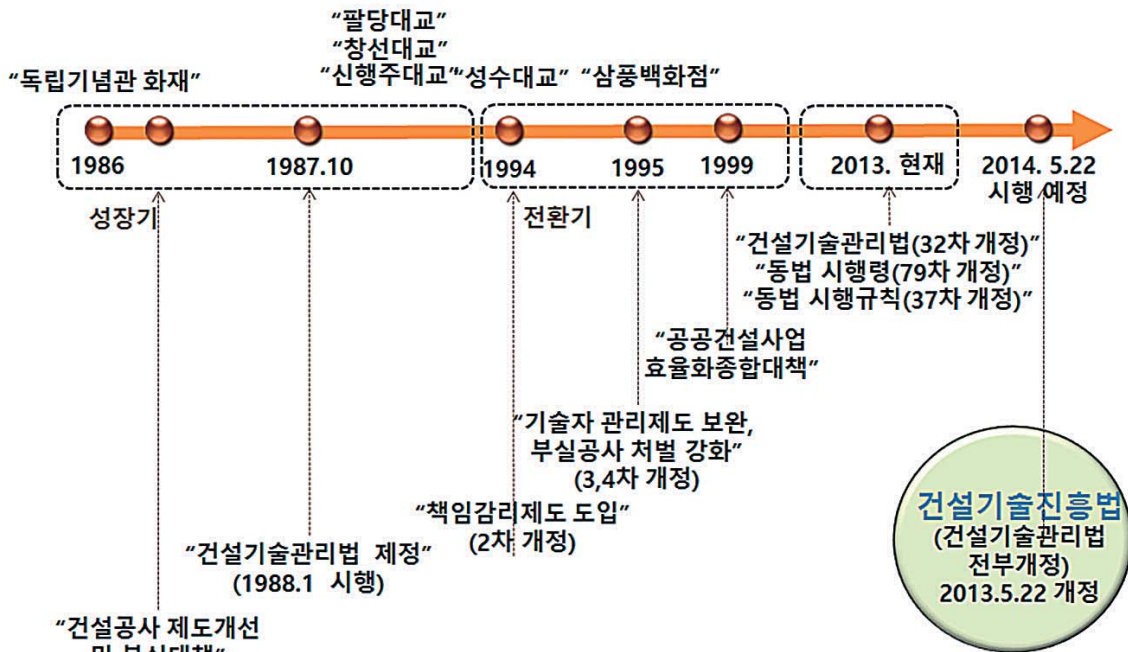


그림 1 건설기술관리법의 연혁 및 건설기술진흥법

## 2. 건설기술진흥법의 구성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이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을 산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노력들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에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별로 다르게 기술되던 구성체계를 ‘총칙’,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의 지원 등’, ‘건설기술자의 육성’, ‘건설기술용역 등’, ‘건설공사의 관리’,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시행규칙에서는 제외)’, ‘보칙’, ‘벌칙’의 동일한 체계로 통일하였다.

구성체계(8장)	주요 내용(91조)
제1장 총칙	• 목적 및 정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인력관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등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의 지원 등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평가기관, 신기술 활용 등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 건설기술자의 육성, 건설기술자의 신고·국가간 상호인정,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결격사유, 영업양도, 실적관리, 등록취소 등, 과징금, 건설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건설기술의 공모, 건설기술용역 대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도, 감독 등,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 표준화, 설계 및 시공기준,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타당성조사, 설계도서의 작성,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용역 및 시공평가,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사후평가,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단체 설립 근거, 인가절차 등, (건설사업관리)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등
제7장 보칙	• 시정명령, 권한 위임·위탁, 수수료 등
제8장 벌칙	• 벌칙사항(징역, 금고, 벌금 등), 양벌규정, 과태료, 등

## 3.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3.1 건설기술용역업의 통합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을 하나의 단일한 업역체계로 통합하고 시·도지사에 등록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건설기술용역’의 정의에 단서조항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 철거업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공에 관한 건설기술과 혼재되어 있던 업무범위의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그리고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용역의 업무에 해당하는 모든 용역의 발주에 별도의 추가적인 등록 없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존 건설기술관리법내에서 등록하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위주의 업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 전문분야로 구분토록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이라는 단일한 업역체계 내에서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검사’로 전문분야를 구분하였다.

표2 건설기술용역업(일반)의 등록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관련)

세부분야	기술인력 등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종합분야	1.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3억원 이상	1.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지반조사 및 계측을 포함한다)·설계·시험·평가 및 자문 2.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3.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 분야	1.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7명 이상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1억원 이상	1.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지반조사 및 계측을 포함한다)·설계·시험·평가 및 자문 2.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건설사업관리 분야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2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이에 따른 등록체계도 완화하여 대다수의 엔지니어링업체가 속하는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종합으로 신고하면 건설사업관리분야의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기준도 최대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사무실, 자본금 3억원 정도면 등록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다. 특히 감리업체와 건설사업관리업체는 기존 규정에서 종합분야 신고를 위해 수석감리사

5명을 포함하여 25명이 필요했으나 특급 1인 포함,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설계 등 용역분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산자원부 소관법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인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기준에 병기토록 규정되어 이중적인 등록조항에 묶여있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기술용역업’이라는 단일한 업역체계내에서 영업양도, 실적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완전한 업역통합의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 3.2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유사한 업무로서 통합에 대한 문제제기가 컸던 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통합에 따라 단일한 건설사업관리제도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감리’라는 표현은 제도가 아닌 업무의 하나로서만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되었으며, 기존 책임감리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감리원은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감리원은 ‘기술지원기술자’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책임감리 대상 200억원 이상 22개 공정에 대한 발주 의미규정은 발주청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로 하여 기존 시장의 규모를 유

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은 기존에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정책의 분리로 인한 추진력 약화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기존 업무범위의 폭을 설계전단계부터 확대하여 설계 전 단계와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등의 업무가 선택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한 형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변경사항으로는 저가 낙찰(낙찰률 70% 미만) 현장의 건설사업관리를 맡을 때는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추가 배치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산된 여러 현장의 통합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토록 하여 발주자의 무리한 통합시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 등은 발주청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되던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PQ기준과 업체 선정방식 등도 통합되어 건축설계업자에 대한 PQ관련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고, 20억이상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기술제안서(TP)평가를 수행하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기술자평가서(SOQ)로 평가토록 규정되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은 기존의 공사비에 따른 투입인원수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용역기간에 따른 대가 산정이 가능토록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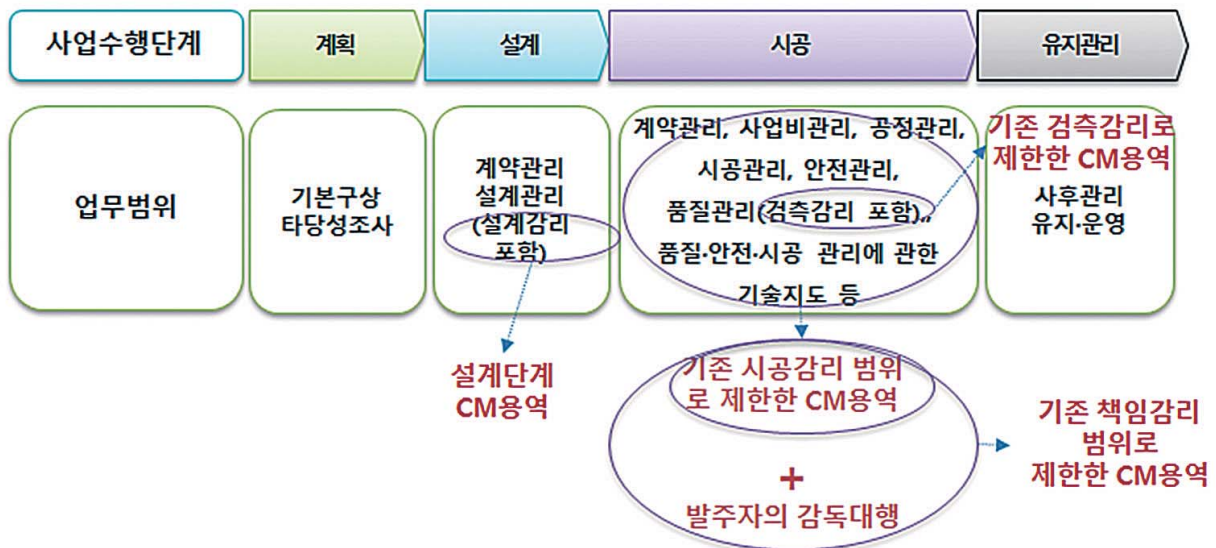


그림 2 기존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적용 개념

### 3.3 건설기술인력과 실적관리의 통합

건설기술자와 품질관리자 및 감리원(수석 감리사와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원)으로 구분되던 건설기술인력은 건설기술자로 통합되고, 건설기술자의 구분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단계로 통일되며, 기술자 경력관리도 통합된다. 그리고 교육훈련 및 업무 정지 등의 제재 조항 역시 하나의 체계로 통합됨과 동시에 기술자에 대한 등급체계의 기준은 과거 학력과 경력 위주의 단순한 경과년수에 기반한 체계에서 벗어나 역량지수(ICEC)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40점), 자격(20점), 학력(20점), 교육(3점) 등을 종합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개정규정에 따른 기존 기술자의 등급 재산정시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건설기술용역의 수행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의 효율성과 관련 증빙자료 축소 등을 위하여 발주청은 계약의 성립과 변경, 준공, 참여기술자 배치 및 철수 현황,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기술용역업에 관련된 정보를 1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적관리가 안되던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여 발주청이 사실을 확인하도록 병행 조항을 규정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기술정보DB로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 3.4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은 진흥법으로서 위상 확보를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정부 노력과 함께 건설기술용역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종합평가(용역 및 시공) 결과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하고 용역이나 공사 발주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하도급체계 양성화를 통해 발주청의 승인(신청 후 14일 이내)하에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하도급 실적에 대한 신고도 가능토록 하여 지금까지 중소기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인정받지 못하던 비정상적인 환경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 3.5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단체와 공제조합

기준에 건설감리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상황을 개선하여 협회명칭을 삭제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 단체로 일반화하고 공통적으로 정관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감리협회의 사업으로 규정된 공제사업은 별도 분리하여 공제조합으로 신설토록 하고 공제조합의 정관내용, 설립인가, 등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등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 4. 건설기술진흥법의 예상효과 및 전망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이 발효되는 2014년 5월은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이 칸막이식 업역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의 통과와 관련 하위법령의 마련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주청 중심의 규제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범위의 건설기술용역이 발주되고, 수행된 용역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피드백되는 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입찰을 위해 수백 페이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현될 수 있는 토대도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관련 연방법인 브룩스법(Brooks Act)가 건축서비스 용역과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건설기술진흥법이 건설기술용역업의 모범이자 근간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건설기술용역 진흥이 발주청의 이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아닌 진흥과 경쟁력의 관점에서 발주청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선언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